

남북 합의서

1992. 9

통 일 원
남북대화사무국

차 례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에 관한 합의서 3
- 남북 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에 관한 합의서 10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4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22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
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29
-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43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48
-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52
- 남북 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57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61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63
-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 67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 북 화 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판문점

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 북 불 가 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 장 남 북 교 류 · 협 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

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

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4 장 수 정 및 발 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무원 총 리 연 형 북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각 분과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 한다.
- ② 쌍방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③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

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 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부문의 남북공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3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 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의 협의결과를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쌍방이 합의하여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을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2월 19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 총리 연형묵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
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체제(제도)인정· 존중

제 1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
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존중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해결한다.

제 2 장 내부분제 불간섭

제 5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비방·증상 중지

제 8 조 남과 북은 언론·삐라 및 그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증상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징인에 대한 지명 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을 비방·증상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남과 북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증상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게시물)을 비롯한 그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증상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남과 북은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파괴·전복 행위금지

제 15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 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 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비호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제 18 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

제 19 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 20 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 6 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 21 조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 22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조치를 강구한다.

제 23 조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 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대표부) 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제 24 조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

제 7 장 이행기구

제 25 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 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제 26 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안에 법률실무

협의회와 비방·중상증지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 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제 8 장 수정 및 발효

제 27 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28 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북측이 제기한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민족을 대표하여 유일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제3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가담 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 하는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해결 한다」는 조항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무력불사용

제 1 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 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제 3 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수단들을 공격, 모의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제 2 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

제 4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제 5 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 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돌려보내는 기간은 1개월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 6 조 남과 북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 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 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해결한다.

제 8 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 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 3 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 9 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 10 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 11 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제 4 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 12 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제 13 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제 14 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 15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제 5 장 협의·이행기구

제 16 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제 17 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제 6 장 수정 및 발효

제 18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 19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무원 총리 연 형 목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경제교류·협력

제 1 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

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 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④ 남과 북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 협력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 ⑦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 ⑧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 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 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

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②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⑤ 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

하도록 한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 구제조치를 취한다.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⑧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⑤ 남과 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 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5 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8 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2 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 9 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 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한다.
-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10 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

구제조치를 취한다.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11 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 12 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 13 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14 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

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3 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 ①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단체들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②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 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 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 ③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 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④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 16 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17 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 18 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 4 장 수정 · 발효

제 19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 보충할 수 있다.

제 20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철폐문제를 남북화해
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해결
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 대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③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률실무협의회, 비방·중상중지 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따로 작성한다.

제 2 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라 함)를 이행한다.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록 또는 세부적인 합의문건을 작성할 수 있다.

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각 실무협의회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 3 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 있다.

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⑥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⑦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위원장이 각기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합의문건은 쌍방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한 합의문건은 쌍방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5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무원 총 리 연 형 목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사이의 불가침을 이행·보장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이하 “군사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군사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② 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부부장급) 이상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한다.

- ③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2 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 대책을 협의한다.
- ②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필요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천한다.
- ③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 사항을 실천한다.
- ④ 위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확인·감독한다.

제 3 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⑥ 군사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에서의 합의문건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키는 경우 그것을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 22 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2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 사항을 협의·실천한다.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 3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⑥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
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⑦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
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
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실무협의회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
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총리 연형묵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 하기 위하여 남북연락사무소(이하“연락사무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하기로 합의 하였다.

제 1 조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측은 「남측연락 사무소」라고 하고 북측은 「북측연락사무소」라고 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연락사무소를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안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설치한다.

제 3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에서 각각 소장 1명,

부소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연락관들로 구성한다.

② 연락사무소 소장은 국장급으로 한다.

③ 연락사무소 소장, 부소장, 연락관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앞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연락사무소 안에 필요한 부서들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제반 연락업무를 수행한다.

의뢰에 따르는 연락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③ 남북사이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

④ 쌍방 연락사무소 사이에 필요한 수의 전화선을 가설하고 운용한다.

제 5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쌍방은 필요에 따라 연락과 접촉을 가진다.
연락사무소 구성원들 사이의 연락은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진행한다.

②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수시로 진행한다.

③ 자기측 지역을 왕래하는 상대측의 연락사무소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④ 연락사무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로 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운영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명절을 비롯하여
각기 제정한 공휴일은 일방의 통지에 따라
휴무일로 한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 7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 대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무원 총 리 연 형 목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3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이하 “핵통제공동위원회”라 함)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핵통제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그중 1~2명은 현역군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차관(부부장) 급으로 한다.
- ② 쌍방은 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③ 핵통제공동위원회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 문제를 토의한데 따라 부속문건들을 채택·처리하는 문제와 기타 관련 사항

②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 교환에 관한 사항

③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④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의 선정, 사찰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⑤ 핵사찰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에 관한 사항

⑥ 핵사찰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⑦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과
사찰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제3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
한다.

①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③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④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⑤ 핵통제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핵통제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3월 18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 원 식	정무원 총리 연형묵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

1990년 7월 26일 발효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남측대표단과 북측 대표단은 1989년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 까지 사이에 판문점에서 8차례의 예비회담과 2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을 가지고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회담 명칭

회담명칭은 「남북고위급회담」(이하 「회담」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2. 회담 날짜

제1차 회담은 1990년 9월 4일부터 9월 7일 까지 하며, 제2차 회담은 1990년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다. 다음 회담 날짜는 매차 회담 때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3. 회담 장소

회담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되 제1차 회담은 서울에서, 제2차 회담은 평양에서 한다.

4. 회담 의제

회담 의제는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로 한다.

5. 회담 대표단 구성

회담 대표단은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7명으로 하되 대표는 장·차관급으로 구성한다. 회담 대표단의 군 대표는 참모총장급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하며 그 수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6. 회담 수행원과 취재기자

회담 수행원은 33명으로 하며, 취재기자는 50명으로 한다.

7. 회담 형식

회담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한다. 회담은 쌍방

대표단 회담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담 테두리안에서 총리 단독회담과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

8. 합의서 채택

합의내용은 각기 2통씩 문서로 작성하여 대표단 수석대표가 서명한 다음 1통씩 교환한다.

9. 회담 기록

회담 기록은 속기·녹음·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초청측은 상대측에 녹음중계선 2회선을 보장하며 텔레비전 녹화기록을 위해 초단파를 상대측 지역에 보내준다.

10. 회담 보도

회담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필요하면 쌍방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

11. 회담장 표지 및 시설

- ① 회담장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 ② 초청측은 회담장에 회담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는다.

③ 초청측은 회담장과 행사장(숙소포함)에서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이 자기측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 제공한다.

12. 신변안전보장

① 초청측은 자기측 지역에 오는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총리명의로 된 신변안전보장각서를 회담 5일전에 판문점에서 상대측에 넘겨준다.

② 초청측은 상대측 인원들의 문서, 통신, 사무용 기재, 사진필름, 녹음 및 녹화테이프, 취재수첩, 보도자료 및 기타 회담에 필요한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13. 대표단 표지 및 증명서

① 쌍방 대표단은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한다. 쌍방은 자기측 인원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14. 남북 왕래절차

①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인원들의 명단을 회담 5일전에 상대측에 넘겨준다.

② 명단에는 성명, 성별, 대표단 직위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③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되는 사항은 먼저 직통전화로 통지하고 판문점을 통하여 문서로 전달한다.

④ 왕래수단은 비행기, 자동차, 기차로 한다. 비행기는 각기 자기측 비행기를 이용하며 서울(김포공항)－평양(순안비행장)사이를 직행한다.

⑤ 회담을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육로로 왕래할 때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하며 초청측 지역에서 초청측의 자동차 또는 기차를 이용한다.

⑥ 초청측은 상대측으로 부터 넘겨받은 명단에 따라 신분을 대조확인하고 상대측 인원들을 접수하며 돌아갈 때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다.

15. 기자의 취재활동

① 초청측은 상대측 기자들의 체류기간 취재 활동을 보장한다.

② 쌍방은 화해와 단합,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16. 체류일정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일정은 3박4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초청측은 체류일정을 회담 5일전에 상대측에 통지하며 이를 쌍방이 합의하여 확정한다.

17. 편의제공

① 초청측은 체류기간 상대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및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②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초청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③ 초청측은 상대측 대표단의 자기측 지역 체류기간중 1일2회 행낭운반을 보장한다.

18. 직통전화

쌍방은 이미 가설된 서울과 평양사이의 직통전화선을 이용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증설할 수 있다.

19. 합의서 발효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합의사항에 대한 폐기 및 수정은 쌍방이 합의하여 할 수 있다.

1990년 7월 26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예비회담 남측대표단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수석대표 송 한 호 단	장 백 남 준

